

## 제 2 부 통관절차

### 제 4 절 원산지증명

#### 제 15 조 원산지신고서

1. 수입 당사국에서의 특혜관세대우 목적상, 당사국의 수출자는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원산지로 간주되고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록 3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 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원산지신고서는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해당 상품임을 확인할 수 있고, 수출자, 수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확인되는 송장 또는 그 밖의 상업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1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신고서는 읽기 쉽고 영구적인 양식으로 영어로 작성되고 수출자의 본 서명을 포함한다.

4.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관련 상품이 수출되었거나 수출 후에는 생산자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다.

5. 원산지신고서 작성시 생산자에게 서류와 정보를 의존하는 수출자는 그 서류와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가 동 신고서가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동 신고서가 적용되는 각 상품의 원산지 지위에 영향을 주는 변화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즉시 서면통보하고, 동 사본을 수출국 관세당국에게 제출

한다. 벌칙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7.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의 요청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 사본 및 동 신고서가 적용되는 각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의 사본을 제공한다. 이러한 목적상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회계장부 검사 또는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그 밖의 감독을 행할 권리를 가진다.

8. 이 조의 목적상, 국내 법령에 따라 상품의 화주로부터 원산지신고서의 작성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지 아니하는 한 운송중개인, 관세사 또는 이와 유사한 자는 “수출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 16 조** **인증 수출자**

1. 수출 당사국이 인증 수출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에 수기로 서명한 것과 같은 본인임을 확인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약속서를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이 협정 하에서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상품을 빈번하게 선적하는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가 서명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인증할 수 있다.

2.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제1항에 규정된 인증 수출자에게 당사국들의 관세당국 간에 수출자의 서명대신 원산지신고서에 사용하기로 합의될 수 있는 세관인증번호 또는 그 밖의 확인양식을 교부한다.

3.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제1항에서 규정한 인증제도의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하여 검증할 수 있고, 수출자가 더 이상 인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인증제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인증을 철회할 수 있다.

## **제 17 조** **수입요건**

1. 각 당사국은 제15조의 의미 내에서 이 협정에 따라 타방 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산지 상품에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수입관세당국은 상품이 이 부속서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수입자 진술이 첨부된 수입신고서를 수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특혜관세대우를 부여받기 위하여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에서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원산지신고서의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 상품의 수입시 특혜관세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 수입자가 수입시 원산지신고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또는 그 밖의 원산지 증빙서류와 수입 당사국의 요구시 상품의 수입관련 서류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조에 규정된 경우 이 부속서의 의미 내에서 원산지상품은 제1항에서 규정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이 협정에 따라 수입시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누린다.

4. 원산지신고서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날로부터 12월 동안 유효하다.

5. 제4항에 규정된 최종제출일 이후에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원산지 신고서라도 예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제출일까지 그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특혜관세대우 적용의 목적상 수리될 수 있다.

6.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수입시 수입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도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가. 수입자가 수입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7. 원산지신고서는 수입 당사국이 적용하는 절차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한다.

8.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의 요구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수입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또는 동 신고서와 관련된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 당사국은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특혜관세대우의 부여를 정지할 수 있다.

## **제 18 조** **분할수입**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규정한 조건하에서 수입자의 요청시 HS 일반통칙 제2조가호의 의미 내에서의 HS 제16부 및 제17부 또는 제7308호 및 제9406호에 해당하는 분해 또는 미조립된 상품을 분할수입하는 경우, 첫 번째 분할수입시에 그 상품에 대한 하나의 원산지신고서만 관세당국에 제출하면 된다.

## **제 19 조** **원산지신고서 면제**

1. 개인이 개인에게 송부한 소포 및 여행자 개인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상품은 원산지신고서의 제출 없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 상품이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신고되며, 그 신고의 진실성에 의심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우편으로 송부된 상품의 경우에는 우편물세관신고서 또는 그 문서에 첨부된 한 장의 서류로 작성될 수 있다.

2. 수취인, 여행자 또는 그 가족의 개인적인 용도의 상품으로만 구성된 일시적인 수입은 그 상품의 성격과 수량으로 보아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할 경우, 상업적 수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목적상, 개인이 개인에게 송부한 소포의 경우 그 상품의 총가격은 다음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미화 1,000달러. 또는

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유로화 500유로

4. 제1항의 목적상, 여행자 개인수하물의 일부인 경우 그 상품의 총액은 다음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미화 1,000달러. 또는

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유로화 1,200유로

5. 상품의 가격이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통화 외의 통화로 송장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경우, 그 금액은 수입 당사국의 자국 통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적용된다.

## 제 20 조

### 증빙서류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상품이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원산지이며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15조 제7항에 규정된 서류는 특히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해당 상품을 획득하기 위하여 수출자 또는 공급자가 수행한 공정의 직접 증거. 예를 들어 그의 회계장부 또는 내부회계관리기록에 기재된 것

나.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그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국에서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다. 재료에 대한 작업 또는 공정이 당사국에 행하여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그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국에서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라.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는 원산지신고서로서 당사국에서 작성된 것. 또는

마. 제13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당사국의 역외에서 행하여진 작업 또는 공정에 관한 적절한 증거로서 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것

## 제 21 조

### 기록유지 요건

1.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제15조제7항에 규정된 서류

및 해당 원산지신고서 사본을 최장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수입자는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은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 **제 22 조**

###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1. 원산지신고서와 제출된 상품이 부합한다는 사실이 적절하게 입증될 경우, 원산지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상품의 정식수입절차상 세관에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간에 사소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원산지신고서를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2. 원산지신고서의 타이핑 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가 그 서류 기재사항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을 품을만한 정도가 아닌 경우, 그 신고서는 부인되지 아니한다.

## **제 5 절**

### **행정협력을 위한 절차**

## **제 23 조**

### **통 보**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국을 통하여 원산지신고서 검증의 책임이 있는 관세당국의 주소를 서로 제공한다.

## **제 24 조**

### **원산지신고서의 검증**

1. 이 부속서의 적절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 및 동 신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관세당국을 통하여 상호 지원한다.

2.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원산지신고서 사후검증을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다.

3. 제1항의 이행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경우에 따라 조회의 사유를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 또는 그 사본을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수집된 모든 서류 또는 정보는 검증요청의 지원을 위하여 제공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행한다. 이러한 목적상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회계장부를 검사하거나 적절한 감독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5.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검증기간 동안 해당 원산지신고서의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정지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전조치를 수반하는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상품의 반출을 허용한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와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 및 가능한 한 수출자의 모든 증빙서류를 제공받는다. 검증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해당 상품이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7.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검증요청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가진다.

8.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규정된 조건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세관공

무원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이행되는 원산지검증과정에 참관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

9.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4년째 되는 해에, 당사국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공동위원회는 이 조의 규정을 검토하고 개정한다.

## **제 25 조**

### **분쟁해결**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검증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된 당사국들 간 분쟁이 당사국들 관세당국 간에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 부속서의 해석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규정된 관세및원산지소위원회에 회부된다. 소위원회는 결론을 포함한 보고서를 공동위원회에 제출한다.

## **제 26 조**

### **비밀유지**

1. 원래 비밀이거나 비밀을 전제로 제공된 모든 정보는 각 당사국의 법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비밀의 유지 의무 대상이 된다. 그 정보는 이를 제공한 인이나 당국의 명시적 허가 없이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이 이 조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지 아니한다고 간주할 경우, 타방 당사국에게 협의를 위하여 서면요청을 할 수 있다. 당사국들은 이 조항의 준수를 확보하는 적절한 조치에 합의할 목적으로 서면요청이 도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한다.

## **제 27 조**

### **벌칙**

각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를 부여받을 목적으로 부정확한 정보가 담긴 서류를 작성하거나 작성하도록 유도한 자 또는 이 부속서상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다.

**제 28 조**  
**특혜관세대우의 배제**

이 부속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당사국은 상품이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부속서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거나, 국내법령에 따라 미납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제 29 조**  
**자유무역지역**

1. 당사국의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의 거래 상품이 운송도중에 당사국의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할 경우, 다른 상품으로 대체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공정 외의 작업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 당사국 영역 내 자유무역지역으로 수입되어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치는 때에는 해당 수출자는 수행된 그 작업 또는 가공이 이 부속서의 규정과 합치하는 경우 새로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 6 절**  
**관세협력**

**제 30 조**  
**관세협력**

당사국들의 관세당국은 통관절차의 조화 및 단순화, 세관감시 및 검증기법에 관한 우수사례와 정보의 공유, 관세전문가 및 세관공무원의 교류 그리고, 관세 관련 현안에 대한 세관공무원 공동훈련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하여 협력할 수 있다.

**제 31 조**  
**관세연락창구**

1. 당사국들은 이 부속서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지정한 관세연락창구의 리스트를 교환한다.

2. 관세연락창구는 이 부속서상 제기되는 모든 사안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관세연락창구를 통하여 사안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부속서에 규정된 관세및원산지소위원회에 회부된다. 소위원회는 결론을 포함한 보고서를 공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절**  
**최종 조항**

**제 32 조**  
**관세및원산지소위원회**

1. 공동위원회 산하에 관세및원산지소위원회를 설치한다.

2. 소위원회는 기술발전, 시장 상황의 변화 또는 그 밖의 국제적 개발과 같은 변화된 환경을 감안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원산지 규정을 검토하는 것을 기능으로 한다. 아울러 소위원회는 원산지 규정에 대한 입장을 준비 및 조정하고, 그 개정을 준비하며, 다음에 관하여 공동위원회를 지원한다.

가.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산지 및 통관절차의 일반 규칙

나. 부록 2 및 4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그리고

다. 공동위원회가 소위원회에 회부한 그 밖의 사안

3. 소위원회는 제25조에 규정된 검증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가능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소위원회는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공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5. 소위원회는 컨센서스에 의하여 운영된다. 소위원회의 의장은 당사국의 대표가 합의된 기간동안 교대로 주재한다. 소위원회의 의장은 첫 번째 소위원회 회의에서 선출한다.

6. 소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된다. 소위원회는 공동위원회, 소위원회의 의장의 직권 또는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소집될 수 있다. 개최장소는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에 교대로 한다.

7. 각 회의의 잠정의제는 의장이 모든 당사국과 협의하여 준비하며, 일반적으로 늦어도 회의 2주 전에 모든 당사국에 전달되어야 한다.

### **제 33 조**

#### **주 해**

1. 당사국들은 관세및원산지소위원회 내에서 이 부속서의 해석·적용 및 집행에 관한 주해에 합의한다.

2. 당사국들은 합의된 주해를 각 내부절차에 따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 **제 34 조**

#### **통과 또는 임시보관 상품**

이 협정의 규정은 이 부속서의 규정에 합치되고 이 협정의 발효일에 당사국을 통과하거나 당사국에 있거나 세관 감시하의 보세창고에 임시보관되어 있거나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상품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협정발효일 후 4월 이내에 해당 수출자는 소급하여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와 동 상품이 직접 운송되었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게 제출한다.

**부속서 I의 부록 1**  
**부록 2 목록에 대한 소개 주석**

**주석 1**

이 목록은 부속서 I 제5조의 의미 내에서 모든 상품이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것으로 간주되는 요구조건을 규정한다.

**주석 2**

2.1 목록의 처음 두 열은 획득된 상품을 기술한다. 제1열은 HS에서 사용되고 있는 류, 호 또는 소호를 기재하고, 제2열은 류, 호 또는 소호에 대한 HS에서 사용되는 상품의 설명을 기재한다. 제1열 및 제2열의 각 기재내용에 대한 규정은 제3열 또는 제4열에 기재된다. 제1열의 기재사항이 "ex"로 시작하는 경우, 이는 제3열 또는 제4열의 규정이 제2열 아래에 기술되지 아니한 류의 일부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처음 두 열의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이 제3열 및 제4열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수출자는 제3열 또는 제4열에 기재된 규정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원산지 규정이 제4열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제3열에 기재된 규정이 적용된다.

**주석 3**

3.1 원산지 지위를 취득한 상품으로서 다른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상품에 관한 부속서 I 제5조의 규정은 원산지 지위가 이 상품이 사용된 공장 내에서 취득되었거나 당사국의 다른 공장에서 취득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3.2 이 목록의 규정은 요구하는 작업 또는 가공의 최소한을 나타내고 그 이상의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것도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 반대로 규정 이하의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것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규정에서 비

원산지 재료가 제조의 특정한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그 재료의 사용이 특정 단계보다 이전 제조단계에서는 허용되고, 그 재료의 사용이 특정 단계보다 이후 제조단계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3 주석 3.2를 저해함이 없이, 규정이 “모든 호의 재료”가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해당 규정에 포함될 수 있는 다른 구체적 제한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품과 같은 호의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 호의 다른 재료를 포함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 제조”라는 표현은 목록의 제2열에 기재된 상품의 기재사항과 다른 상품과 같은 호에 분류된 재료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4 목록의 규정이 상품이 하나 이상의 재료로부터 제조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이는 하나 이상의 재료가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규정은 모든 재료의 사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3.5 목록의 규정이 상품이 특정 재료로부터 제조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 조건은 고유의 특성 때문에 그 규정을 충족시킬 수 없는 다른 재료의 사용을 당연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3.6 목록의 규정에서 사용가능한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격에 대한 두 개의 비율이 기재된 경우, 이 비율들은 합산될 수 없다. 즉,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격은 기재된 비율 중 높은 것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개별 비율은 해당 비율이 적용되는 특정 재료와의 관계에서 초과되어서는 아니된다.

3.7 목록 제50류 내지 제60류의 규정에서 “적어도 두 개의 예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라 함은 누임, 표백, 머서화 가공, 다림질, 표면을 긁어 세우기, 캘린더가공, 주름방지 가공, 열 고정, 주름제거 후 평평하게 광택 내기, 침투, 보수 및 실밥 제거와 같은 종류의 작업 또는 가공을 말한다.